

농 어 촌 정 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2021. 6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농업기반과)

1. 개정이유

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당해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(법률 제18167호, 2021. 4. 13. 공포, 2021. 10. 14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노후화 및 지진·홍수 증가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체계 정비와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, 환지사 시험 공고기간 연장 및 간척지의 임시사용 범위 확대 등 그 간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지자체장이 폐지신청을 요구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범위 확정(안 제32조의2)

-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종류, 명칭, 위치, 면적, 수혜면적 등 대상 범위 확정(劃定)

나. 폐지 신청을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와 관련한 관계 주민 의견 청취 절차 규정(안 제34조의3)

-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 일간신문,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폐지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범위, 폐지 및 폐지 불가 사유, 폐지 이후 활용계획, 청문 절차 및 열람 방법 등 공고
- 관계주민이 열람한 후 폐지의견이 있는 경우,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의견 제출
-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관계 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반영토록 규정

라. 폐지 신청을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청문 절차 규정(안 제34조의4)

-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지상권자, 임차권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당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청문 실시
- 청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르도록 규정

마.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(안 제26조제3항 별표1 및 제27조제1항제1호)

- 저수용량 5~30만 세제곱미터인 저수지에 대해 10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현행 저수용량 30만 세제곱미터 이상 저수지에서 20만 세제곱미터 이상 저수지로 확대

바.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체계 정비(안 제26조제3항 및 관련 별표1)

-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최초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을 준공한 후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(현행은 5년 이내)에 실시하도록 하고,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저수용량 1,000만 세제곱미터 이상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갈음

사. 환지사 시험 공고기간 연장(안 제37조제2항)

- 환지사 시험공고일을 타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시험일 90일 전으로 개정(20일 → 90일)

아.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범위 확대(안 제22조의2)

- 방조제 축조로 노출된 토지를 매립공사 완료전까지 제한적으로 단년생 작물 경작 등에 임시사용하고 있는 것을 문화관광시설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 확대

3. 관련 예상쟁점

가. 관계부처 입장 : 해당없음

나. 관련 단체 등 입장 : 해당없음

다. 쟁점 대응방안 : 해당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추진일정

1) 제·개정안 확정 : '21 6월

2) 관계부처협의 : '21년 6월

3) 입법예고 : '21년 7월~8월

4) 규제심사 : '21년 8월

5) 법제처 제출 : '21년 8월

6) 공포 : '21년 10월 14일

나. 규제관련 검토사항 : 해당없음

다. 재정수반 여부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- 1) 개정안, 별첨
- 2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3) 법안담당

직 위	성 명	사무실 전 화	HP	E-mail
식량정책관	박수진	044-201-1801	010-2318-1367	psjin73@korea.kr
농업기반과장	박재수	044-201-1851	010-2770-5589	jspark1@korea.kr
간척지농업과장	김춘기	044-201-1871	010-2777-3472	kim1207@korea.kr
담당사무관	김영민	044-201-1852	010-3392-5646	ymk88@korea.kr
담당사무관	강대일	044-201-1860	010-4248-5308	soap9076@korea.kr
담당서기관	조래청	044-201-1877	010-8704-1610	jorc@korea.kr
담당사무관	임정근	044-201-1853	010-6325-1806	samsom@korea.kr
담당주무관	김형대	044-201-1854	010-8288-5046	kdh7924@korea.kr
담당주무관	신주옥	044-201-1861	010-8635-4620	sjuoek@korea.kr
담당주무관	김보배	044-201-1882	010-5268-1299	kimbb1105@korea.kr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홈페이지”를 “인터넷 홈페이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제3항제2호 및 제3호”를 “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“제3항제3호”를 “제3항제3호 및 제4호”로, “축제·공연·전시”를 “축제·공연·전시 및 문화관광시설 등의 설치·운영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일부 감면 또는 면제”를 “감면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감면”을 “감액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3항제2호 또는 제3호”를 “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”로 한다.

4.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

제31조에 따른 문화관광과 관련한 조형물, 산책로, 간이휴게시설 등
임시시설물 설치

제2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,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이 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본다.

제27조제1항제1호 중 “30만세제곱미터”를 “20만세제곱미터”로 한다.

제3장제2절에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의 범위 등)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폐지의 대상, 범위 등을 확정(劃定)하여야 한다.

1. 종류
2. 명칭
3. 위치
4. 면적
5. 수해면적
6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확정(劃定)한 사항을 토대로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2조의3(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)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수해 농업인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의 소유자 등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(이하 “의견 청취”라 한다)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 일간신

문, 공보나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관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
2.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및 폐지 불가 사유
3.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이후 활용 계획
4. 의견제출의 기간과 방법
5. 청문의 대상과 방법 등 절차 안내

② 관계 주민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열람한 후 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, 의견제출의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제32조의4(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관련 청문 절차)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3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

2.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지상권 및 임차권과 사용대차(使用貸借)에 따른 권리, 목적 외 사용권이나 그 밖에 사용·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

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청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다.

제37조제2항 중 “20일”를 “90일”로 한다.

별표 1 제2호가목1) 본문 중 “10년 이상 지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5년”을 “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”로 하고, 같은 호 대상시설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2종 시설	1)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 2)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,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.
----------	--

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 중 “30만톤”을 “30만세제곱미터”로, “국가방조제”를 “국가 관리방조제”로 하고, 같은 비고 제2호 중 “30만톤”을 “30만세제곱미터”로, “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”를 “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공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1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 영 시행일 기준으로 준공일로부터 13년이상 경과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.
2. 이 영 시행일 기준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준공일로부터 11년이상 13년 미만 경과한 경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, 9년이상 11년 미만 경과한 경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
3.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3조(비상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총저수용량 20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를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시행령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2조의2(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등)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를 임시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등에게 사용(이하 “임시사용”이라 한다)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시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<u>홈페이지</u>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	제22조의2(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인터넷 홈페이지 ----- -----.
1. 임시사용 대상 토지의 면적	1. -----
2. 임시사용의 대상자	2. -----
3. 임시사용의 신청 및 계약절차	3. ----- --
4. 임시사용 시 준수사항	4. -----
5. 임시사용한 토지의 원상복구 계획(<u>제3항제2호 및 제3호</u> 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)	5. ----- ---(<u>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</u> ----- -----)

② (생 략)

③ 임시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하여야 한다.

1. 단년생 작물의 경작
2. 농업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시험·연구를 위한 작물 등의 경작
3.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3조에 따른 향토 문화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·전시

<신 설>

④ 임시사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제3항제1호에 따른 용도로 임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-----
2. -----

--
3. -----

4.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1조에 따른 문화관광과 관련한 조형물, 산책로,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 설치

④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
시사용하는 경우: 3년 이내. 이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2. 제3항제2호에 따른 용도로 임
시사용하는 경우: 해당 시험·
연구에 필요한 기간 이내

3. 제3항제3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: 해당 축제 · 공연 · 전시에 필요한 기간 이내

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3조 각 호의 자에게 임시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시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일부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1. 제3항제1호에 따른 용도로 임
시사용하는 경우로서 자연재해
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:
일부 감면

2.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

2. (현행과 같음)

3. 제3항제3호 및 제4호-----
----- 축제 ·
공연 · 전시 및 문화관광시설
등의 설치 · 운영 등-----

⑤

감면

1. -----

---감액

2. -----

하여 <u>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</u>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: 면 제 ⑥ ~ ⑦ (생 략) 제26조 ①·②(생략)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 설 및 실시시기는 별표 1과 같 다. <u><후단 신설></u> ④ ~ ⑧ (생 략) 제27조(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)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“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을 말한다. 1. 총저수용량이 <u>30만세제곱미</u>	---<u>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</u> ----- -- ⑥ ~ ⑦ (생 략) 제26조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--. <u>이 경우,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이 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본다.</u> ④ ~ ⑧ (현행과 같음) 제27조(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20만세제곱미</u>
--	--

터 이상인 저수지

2·3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터 -----

2·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32조의2(농업생산기반시설 폐

지의 범위 등) ① 농업생산기반
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2항
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
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농업생산
기반시설의 폐지 요구를 받은
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
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
조사하여 폐지의 대상, 범위 등
을 확정(劃定)하여야 한다.

1. 종류

2. 명칭

3. 위치

4. 면적

5. 수혜면적

6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
이 정하는 사항

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
1항에 따라 확정(劃定)한 사항을
토대로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

<신 설>

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
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
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2조의3(농업생산기반시설의
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
취)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
는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폐지
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
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수혜
농업인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부
지의 소유자 등 관계 주민의 의
견을 청취(이하 “의견청취”라
한다)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
사항을 해당 지역 일간신문, 공
보나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관
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
시판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관
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
여야 한다.

1.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
항
2.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및
폐지 불가 사유
3.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이후 활용 계획

4. 의견제출의 기간과 방법

5. 청문의 대상과 방법 등 절차

안내

② 관계 주민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열람한 후 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, 의견제출의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해당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제32조의4(농업 생산기반시설의 폐지 관련 청문 절차) ① 농업 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3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에 이의

<신 설>

제37조(환지사 시험)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(換地士)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, 시험과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3과 같

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

2.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지상권 및 임차권과 사용대차(使用貸借)에 따른 권리, 목적 외 사용권이나 그 밖에 사용·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

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청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다.

제37조(환지사 시험) ① (현행과 같음)

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20일 전까지 시험 일시·장소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환지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-----

90일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공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1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 영 시행일 기준으로 준공일로부터 13년이상 경과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종전 기준

[별표1]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설 및 실시시기(제26조제3항 관련) 2. 정밀안전진단	에 따른다. 2. 이 영 시행일 기준으로 농업 생산기반시설이 준공일로부터 11년이상 13년 미만 경과한 경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, 9년이상 11년 미만 경과한 경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 3.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 제3조(비상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총저수용량 20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를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27조제1항제1호 개정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[별표1]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설 및 실시시기(제26조제3항 관련) 2. 정밀안전진단
---	---

대상시설	실시시기	대상시설	실시시기
가. 1종 시설	1) 준공 후 <u>10년 이상</u> 지난 <u>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</u> 실시한다. 다만,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태가 양호한 시설과 개수·보수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다음 한 차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 2)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,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	가. 1종 시설	1) 준공 후 <u>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실시</u>하고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로부터 <u>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</u> 실시한다. 다만,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태가 양호한 시설과 개수·보수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다음 한 차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 2)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,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.
나. 2종 시설	<u>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,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</u> 실시할 수 있다.	나. 2종 시설	1) <u>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</u>는 준공 후 <u>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실시</u>하고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로부터 <u>10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</u> 실시한다. 2)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,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.

--	--

비고

1. 1종 시설: 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인 저수지, 단위시설(1개소)당 2,000마력 이상인 양수장·배수장, 「방조제관리법」에 따른 국가방조제 및 하구둑
2. 2종 시설: 총저수용량 30만톤 미만인 저수지, 단위시설(1개소)당 1,000마력 이상 2,000마력 미만인 양수장·배수장, 「방조제관리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
3. 3종 시설: 1종·2종 시설 외의 시설 중 양수장, 배수장, 취입보, 지하수 이용시설, 용수로, 배수로 및 그 부대시설

--	--

비고

1. 1종 시설: 총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, 단위시설(1개소)당 2,000마력 이상인 양수장·배수장, 「방조제관리법」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 및 하구둑
2. 2종 시설: 총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, 단위시설(1개소)당 1,000마력 이상 2,000마력 미만인 양수장·배수장, 「방조제관리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
3. 3종 시설: 1종·2종 시설 외의 시설 중 양수장, 배수장, 취입보, 지하수 이용시설, 용수로, 배수로 및 그 부대시설